



**Los Angeles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Equitable Building)  
Tel: (213) 385-IMIN (4646)  
Fax: (213) 385-4040  
E-mail: [imin@iminusa.net](mailto:imin@iminusa.net)

**Irvine Office:**  
20 Corporate Park. Suite 330  
Irvine, CA 92606  
(Between Jamboree and Beckman)  
Tel: (949) 551-IMIN (4646)  
Website: [www.iminusa.net](http://www.iminusa.net)

## Newsletter APRIL 2020

### <COVID-19 정부혜택 받아도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는지?>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사태로 정부혜택을 받아도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연방정부 혜택으로는 실업 급여 프로그램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과 경제 부양 정책 (Stimulus Package)이 있습니다.

첫번째, 실업 급여 프로그램은 최근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 중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이 맞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받으시는 현금보조 혜택은 공적부조(Public Charge Final Rule)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경제 부양 정책에는 2018, 또는 2019 년의 세금보고에 근거해서 해당이 되시는 개인에게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수에 따른 정부 보조 금액이 전달 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 부양 정책에 속한 SBA Loan 과 곧 시작하는페이체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라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한다면 일정한 금액을 정부에서 융자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임대료 등 회사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만큼 융자금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공적부조(Public Charge Final Rule)의 예외규정인 재난구제 (Disaster relief)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케이스가 있으시더라도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향후에 규정이 바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 신청 방법,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민국 USCIS In-Person Service 업무 중단 연장>

이민국이 5 월 3 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예방 차원으로 지문날인, 인터뷰, 그리고 시민권 선서 등 in-person service 업무중단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위와 같은 결정에 영향을 받는 신청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또한 이민국은 취소된 모든 예약들에 대해 새로운 날짜로 예약을 다시 잡아 통보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민국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에 따라 향후 추가사항을 알려겠다고 합니다. 5 월 3 일 이후에 이민국의 in-person service 업무가 계속 중단될지는 지켜 봐야겠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중단되는 서비스는 대면 (in-person) 서비스이며 다른 이민국 업무들은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